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개정문

개정 2026. 3. 24. · 시행 2026. 3. 24.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교법인 삼육학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10인"을 "11인"으로 하고, "2009.2.16, 2015.1.22.)"를 "2009.2.16., 2015.1.22., 2026. 3. 24.)"로 한다.

제84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㉞ 각급학교는 관련 인사규정에 따라 직원 인사위원회에서 근속승진 대상자의 승진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학교장의 제청으로 법인이사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원인사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이 임명하는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 또는 행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항신설 2024. 3. 1.,개정 2026. 3. 24.)

제87조 중 "관하여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을 "관하여"로 한다.

제9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대학교본부에 교목처, 교무처, 학생처, 기획처, 사무처, 국제처, 연구처, 입학처, 재무처를 두고, 총장 직속기구로 브랜드전략본부, 교육혁신원, 대학일자리본부, 글로벌사회혁신원, SU인권센터, AI융합교육원, 학술정보원, 국제전략원을 둔다. (개정 2009.3.19., 2014.1.17., 2016.0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07.26., 2023.3.1., 2026. 3. 24.)

②교목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국제처장, 연구처장, 입학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은 3급 또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며, 재무처장은 3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4.1.17., 2015.1.22., 2016.1.28., 2018.1.18., 2020.02.13., 2020.11.18., 2022.2.17., 2022.7.26., 2023.3.1., 2026. 3. 24.)

③제1항의 각처 및 기타 하부조직에는 운영에 필요한 실, 본부, 센터, 팀 및 기타조직을 필요에 따라 둔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20.11.18.)

④부처장, 실장, 본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4급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 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 이상으로 보하며, 팀장은 6급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2016.1.28., 2020.11.18., 2022.2.17.)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3.19., 2011.3.1., 2015.1.22.)

제6항 내지 제11항 삭제 (2015.1.22.)

부 칙

이 정관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